

2007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예산은 총 6,402억 원으로 ESCO사업에 1,474억 원이 책정됐다. 올바른 ESCO 사업을 위해 2007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에너지관리공단 ESCO팀에게 들어봤다.

달라지는 ESCO자금지원과 한도 및 조건과 규모는?

먼저 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3:7로 배정했던 예산비율을 올해는 4:6으로 조정하며 자금의 일시소진을 예방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두고 접수분을 일괄 검토해 업체별로 지원액을 조정, 추천하게 된다. 또, 매년 반복돼오던 자금의 조기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착순 지원도를 폐지한다.

상환기간 조정은 기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전기설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열설비)으로 한다.

금리 담보 변동은 3.5%(분기별 변동), 담보 고정 3.0%, 신용 변동은 최고 6.5%(분기별 변동), 신용 고정은 5.25~8.0%다. 또한, 공동주택 소형열병합발전 적격심사 기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ESCO사업으로 소형열병합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사업에 한해서만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우대지원과 특정 업체의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들

중소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ESCO예산 중 60%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다만, 7월말 기준 잔여예산 발생시에는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차등지원으로 대기업 80%, 중소기업 90% 현행을 유지한다.

특정업체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설정을 300억 원 이내로 하고 동일투자자당 지원규모 조정은 200억 원 이내에서 150억 원 이내로 한다.

자금 지원 대상 품목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06년 : 126개 → '07년 : 109개

(공기열원히트펌프 등 지원실적이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17개 품목 지원 제외)

※ 지원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대상 : ▲보일러연도자동장치 ▲년설캔드 모터펌프 ▲응축수 출구제어 시스템 ▲연속주조장치 ▲유동판 농축 탈수장치 ▲막분리방식을 이용한 농축장치 ▲선회류식 흡수세정장치 ▲근적외선 분광분석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분석시스템 ▲자동차의 자중을 이용한 발전시스템 ▲엔진공회전제어장치 ▲집단에너지공급 중단에 따른

보일러 설치 ▲재실감지형광등 제어센서시스템

※ 민원발생 및 에너지절약효과 논란 품목 : ▲공기열원히트펌프 ▲역률자동조절장치 ▲조명전용전력조절장치

※ 범위조정 : ▲폐열회수형히트펌프 ▲수축열시스템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시 주의점

당해년도 소요자금으로 대출승인된 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 자금을 대출할 시에는 시설의 설치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한다.(다만, 계약별 추천자금의 30% 범위 내에서 계약금 또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외 자금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대출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초 자금 인출을 하지 못할 경우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출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업자(ESCO)는 3년간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후관리 결과 유용된 자금은 정부지정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자금신청시 유의사항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담보가 필요한 자금이므로 신청전 거래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 가능한 은행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 대상시설의 성능은 시설의 설치 장소·조건 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치전 면밀히 검토후 추진해야 하며, 산업자원부나 공단에서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
- 특정 업체에 대한 인증은 없다.
 - 용자지원 대상설비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지침 세부내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하며, 원리나 구조가 용자 대상시설로 적합하면 제조업체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설비에 포함된다(산업자원부나 공단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인증은 하지 않음).
- 계약서에 설치기기의 모델명 및 VAT 유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약내역서는 신청시설의 주요설비에 대한 부분별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 ※ ‘설치보조금’을 받는 축냉식냉방기기 및 ‘고효율기기 장려금’을 받는 기기를 신청할 때는 보조금

및 장려금 액수가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 첨부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사진 파일을 첨부해야 하며, 원본이 아닌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후 스캔하여 첨부해야한다.

※ 첨부서류(각서, 계약서, 원본대조필 등)의 도장은 모두 일치해야 함.

- 설치장소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주소가 다를 경우
 - 설치장소인 건물(토지)가 신청자 소유인 경우 : 설치장소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첨부
 - 설치장소인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 자금신청 반려 대상

- 자금지원 대상 자격 미비
 - 전년도에 계약한 사업,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의 신청, 전년도 이전에 기추천한 시설의 신청, 시공사가 신청자인 경우 등
- 자금추천 신청 서류 미비
 - 필수서류(각서, 계약서, 견적서 및 세부명세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등) 미첨부시

■ 상담 및 접수처

- 담당부서 :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 일반 절약, 수요관리, VA, 집단에너지 자금추천 : ☎ 031)260-4342~5
- ESCO 자금추천 : ☎ 031)260-43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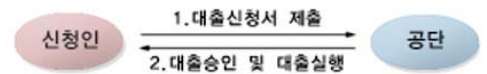
- 자금대여 및 세제지원 : ☎ 031)260-4352~5
팩스 : 031) 260-4359
- E-mail : financial@kemco.or.kr

자금지원절차 및 취급은행

- 지원기간 : 추천신청 접수개시일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접수순 지원
- 에너지관리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신청
 - 인터넷에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



- 공단에 직접대출 신청
 - 정부·지자체 및 정부출자기관의 투자사업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역농협제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역수협제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1. 자금추천 관련

-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일 경우는 공인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별지서식 2호) 또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 공문서(벤처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인증서 등)를 첨부하여 추천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비율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 자금추천을 접수순으로 지원한다.
- 당해년도 개시일 이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해 당해년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당해년도 개시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집단에너지사업 또는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년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년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 공단은 자금추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금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추천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년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하되,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금액 등 추천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추천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4/4분기에는 당해년도 추천금액 변경의 경우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변경할 수 없다.

2. 추천·대출승인 취소관련

-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2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일로 본다.
-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년도 말까지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된다.
-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다음년도 말까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사업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해년도 말까지 추천 금액(4/4분기에 추천금액 변경시는 변경전 금액으로 산정)의 50% 이상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진단기관의 진단 수행결과 등이 공단의 전문가 평가결과 에너지관리기준에 현저히 부적정할 경우에는 재진단을 실시하게 하거나 진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 ☎